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.  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6. 11. 한병도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6. 1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9.2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  
체토론, 소위원회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5.2.20.) 상정, 심사, 의결(원안  
가결)

제2차 행정안전위원회(2025.2.25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원안  
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한병도의원)

「형사소송법」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

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「공직선거법」이 개정(2021. 3. 23.)되어,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‘사법경찰관’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(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30제1항),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(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)에서는 ‘사법경찰관’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18조의30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조문상)

현행법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권발급제한의 요청 방식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조항에서는 ‘사법경찰관’이 누락되어 있어, 개정안은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현행법 제218조의30 제1항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여권발급제한 요청 시 서면으로 하는 등 관련 후속절차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요청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.

이는 명백한 입법상 미비로 보이는 바,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.

##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##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조은희)

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요청 및 연장방식 등의 요청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#### 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내용

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[붙임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의3제2항 중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”를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”을 각각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18조의30(국외선거법에 대한<br>여권발급 제한 등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18조의30(국외선거법에 대한<br>여권발급 제한 등) ① (현행과<br>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<br/>검사가</u>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<br>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<br>그 요청사유, 제한기간 또는 반<br>납 후의 보관기간(이하 “보관<br>기간”이라 한다) 등을 적은 서<br>면으로 하여야 한다. | 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<br/>또는 사법경찰관이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|
| ③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<br/>검사는</u>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<br>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<br>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<br>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<br>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<br>을 요청할 수 있다.   | ③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<br/>또는 사법경찰관은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|
|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<br>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<br>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<br>하되,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<br/>검사는</u>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<br>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                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<br/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</u> -----<br>-----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<br>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<br>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<br>할 수 있다. |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⑤・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・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|